

2026년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 2차 모집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사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협약체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장 검증이 완료된 스타트업 대상 현지 생태계(AC, VC 등) 및 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매출 확장 등 스케일업 지원
- (지원대상)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최근 3년 내 Series A 수준의 누적 투자유치 실적(10억원 이상)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
 - * 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6.7월 ~ 11월 예정)
- (선정규모) 총 5개사 내외
- (지원국가) 서유럽 권역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 (지원내용) 해외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국내, 현지), 해외진출 자금(49백만원 내외) 지원

2

세부지원내용

□ (지원 국가) 서유럽 권역*(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 본 프로그램은 권역 내 3개국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네덜란드 →스페인→영국)되며, 참여기업은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가별 AC 현황>

주관기관	운영권역	운영국가	현지 AC
펜벤처스코리아	서유럽 권역	영국	London Venture Capital Network
		스페인	Tenity(Madrid)
		네덜란드	GI Ventures Netherlands

□ (지원 내용) 해외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국내, 현지), 해외진출 자금(49백만원 내외) 지원

- (해외 투자유치) 해외 투자유치 희망 기업 대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 미팅 등) 지원
- (해외 액셀러레이팅) 국가별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협력 파트너사 발굴 등 현지 진출 밀착 지원

구분	지원 세부 내용														
국내·현지 지원 프로그램	<p>□ 해외 투자유치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14주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주) 국내 3주 + 온라인 3주 + 현지 8주(네덜란드→스페인→영국) - (국내 프로그램) 오프라인·온라인 등을 통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사항 등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KPI 워크숍)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목표 및 세부 활동 계획 등 현지 진출 목표 수립·확정 ② (사전교육)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 등을 매칭하고, 사업비 교육·법률·회계 멘토링, 투자상담 등을 통해 현지 진출전략 사전 준비 -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선정 후 현지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참여(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유치) 현지 AC·VC 등으로 구성된 멤버십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업 대상 사전 투자 검토 및 투자유치 연계 기회 등 제공 ② (액셀러레이팅) 현지 프로그램(현지화 컨설팅, 파트너십 발굴, 현지 진출전략 수립, 1:1 멘토링, 전시회 연계 등)을 통해 기업별 KPI 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AC</th> <th>투자유치</th> <th>액셀러레이팅</th> </tr> </thead> <tbody> <tr> <td>영국</td> <td>London Venture Capital Network</td> <td rowspan="3">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전문가 미팅·네트워크 연계 등</td> <td>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현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발굴 등</td> </tr> <tr> <td>스페인</td> <td>Tenity(Madrid)</td> <td>시장 진입 전략 진단, 현지 행정·법무 실무 지원, 테크 컨퍼런스 참가 연계 등</td> </tr> <tr> <td>네덜란드</td> <td>GI Ventures Netherlands</td> <td>현지 네트워크 연계, 1:1 멘토링 등, BM/GTM 등 현지 진출 전략 수립</td> </tr> </tbody> </table>	국가	AC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영국	London Venture Capital Network	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전문가 미팅·네트워크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현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발굴 등	스페인	Tenity(Madrid)	시장 진입 전략 진단, 현지 행정·법무 실무 지원, 테크 컨퍼런스 참가 연계 등	네덜란드	GI Ventures Netherlands	현지 네트워크 연계, 1:1 멘토링 등, BM/GTM 등 현지 진출 전략 수립
	국가	AC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영국	London Venture Capital Network	Closed IR, Demo Day, 현지 VC/투자사/전문가 미팅·네트워크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현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발굴 등											
스페인	Tenity(Madrid)	시장 진입 전략 진단, 현지 행정·법무 실무 지원, 테크 컨퍼런스 참가 연계 등													
네덜란드	GI Ventures Netherlands	현지 네트워크 연계, 1:1 멘토링 등, BM/GTM 등 현지 진출 전략 수립													
* 현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 진출자금) 프로그램 참가 목적의 여비, 인건비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해외 진출자금 지원(선정 후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참조)

구분	지원 세부 내용																
해외 진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49백만원) 지원 ○ 사업비 사용 및 집행은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에 따름 																
	<p>< 총사업비 구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35 642 694 728"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 <th colspan="2" data-bbox="694 642 1412 728">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30% 이상)</th> </tr> <tr> <th data-bbox="694 728 1053 772">현금</th> <th data-bbox="1053 728 1412 772">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5 772 694 828">총사업비 70% 이하</td> <td data-bbox="694 772 1053 828">총사업비 10% 이상</td> <td data-bbox="1053 772 1412 828">총사업비 20% 이하</td> </tr> </tbody> </table>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30% 이상)		현금	현물	총사업비 70% 이하	총사업비 10% 이상	총사업비 20% 이하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30% 이상)														
		현금	현물														
	총사업비 70% 이하	총사업비 10% 이상	총사업비 20% 이하														
	<p>< 사업비 구성(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35 911 566 963">총사업비</th> <th data-bbox="566 911 790 963">정부지원사업비</th> <th colspan="2" data-bbox="790 911 1412 963">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r> <tr> <td></td> <td></td> <th data-bbox="790 963 1101 1008">현금</th> <th data-bbox="1101 963 1412 1008">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5 1008 566 1064">7,000만원</td> <td data-bbox="566 1008 790 1064">4,900만원</td> <td data-bbox="790 1008 1101 1064">700만원</td> <td data-bbox="1101 1008 1412 1064">1,400만원</td> </tr> <tr> <td data-bbox="335 1064 566 1108">100%</td> <td data-bbox="566 1064 790 1108">70%</td> <td data-bbox="790 1064 1101 1108">10%</td> <td data-bbox="1101 1064 1412 1108">20%</td> </tr> </tbody> </table>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p>* (현물)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p>																	
<p>< 사업비 비목(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35 1281 518 1332">비목</th> <th data-bbox="518 1281 1412 1332">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5 1332 518 1657">인건비</td> <td data-bbox="518 1332 1412 1657"> - 소속 직원이 해외 진출(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인건비는 현금 지급 불가 ** 인건비는 정부지원사업비 50%까지 계상 가능 (예시) 정부지원사업비가 49백만원인 경우,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물) 계상 : 가능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계상 : 불가 </td> </tr> <tr> <td data-bbox="335 1657 518 1803">지급수수료</td> <td data-bbox="518 1657 1412 1803"> - 회계 감사비 및 사업비 모니터링 비용 등 - 현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비자발급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해외송금 수수료, 해외법인설립 등 </td> </tr> <tr> <td data-bbox="335 1803 518 1971">여비</td> <td data-bbox="518 1803 1412 1971">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국내) 또는 타국가(해외)로의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td> </tr> </tbody> </table>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 소속 직원이 해외 진출(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인건비는 현금 지급 불가 ** 인건비는 정부지원사업비 50%까지 계상 가능 (예시) 정부지원사업비가 49백만원인 경우,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물) 계상 : 가능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계상 : 불가	지급수수료	- 회계 감사비 및 사업비 모니터링 비용 등 - 현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비자발급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해외송금 수수료, 해외법인설립 등	여비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국내) 또는 타국가(해외)로의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 소속 직원이 해외 진출(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인건비는 현금 지급 불가 ** 인건비는 정부지원사업비 50%까지 계상 가능 (예시) 정부지원사업비가 49백만원인 경우,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물) 계상 : 가능 → 인건비는 25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계상 : 불가																
지급수수료	- 회계 감사비 및 사업비 모니터링 비용 등 - 현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비자발급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해외송금 수수료, 해외법인설립 등																
여비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국내) 또는 타국가(해외)로의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최근 3년* 내 Series A 수준의 누적 투자유치(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26.6.15.)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최근 3년 내 : '23.6월~'26.7.6.(신청·접수마감일)까지 투자 계약이 완료된 건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 (투자 증빙)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사, 투자금, 계약일 등이 포함된 투자계약서 제출(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엔젤투자조합 등)

* 투자실적은 사업계획서(양식) 3p 'Funding history'에 기재하며, 증빙은 발표평가 전 제출 (단, 서류평가 이후 제출한 증빙 검토 시 요건이 미충족하는 경우 요건탈락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7년 이내) **2019년 6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6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산업창업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19~'25년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형 사업(거점형 제외)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참고3]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26. 6. 15(월) ~ 7.6.(월) 15: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7: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7: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①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 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②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핀벤처스코리아) 선택 필수**
 -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기술분야'와 시스템 접수 '기술분야'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③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양식)] 참고)

제출시기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신청·접수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붙임 1) 양식에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용량제한 30MB (8페이지 이내)
		③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 2) 양식에 첨부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요건검토 서류는 서류평가 이후 징구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⑤ 공동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공동/각자대표 해당
	필수	⑥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붙임 2) 증빙서류 양식에 별도 첨부하여 시스템 업로드
		⑦ 사업자등록증명		
발표평가	필수	⑧ 투자증빙서류	별도 안내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⑨ 창업기업 확인서**		
		⑩ 영문 발표자료(PPT/PDF)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산업분야(업력 7년~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 검토 예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현지 AC, VC 등	현지 AC, VC 등	창업진흥원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평가 이후 결과 안내 예정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창업기업확인서 등) 필수 제출이며, 신산업 분야(업력 7~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가점 대상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평가 가점 부여(중복 불가)

< 서류평가 가점 대상 사업 >

구분	사업명	비고
가점 (최대 1점)	'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최종평가 "우수" 창업기업	창업진흥원에서 최종명단 확인을 통해 가점 부여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진출·수상팀	
	'25년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CES, VIVA Tech, BIBAN, Startup Mahakumbh, SWITCH)기업	

③ (발표평가) 현지 액셀러레이터·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30분 내외)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글로벌 진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단,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하에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 중 C레벨 이상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균등 배정(49백만원)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6년도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사전 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

- 팀 역량, 제품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사업 준비도, 프로그램 적합성,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평가 세부내용	비고
가점	• 최대 1점(공고문 8p 서류평가 가점 대상 사업)	서류
팀 역량 (Quality of the Team)	• 창업자 및 팀의 전문성, 역할 구성의 적정성, 글로벌 경험, 글로벌 환경에서의 실행 가능성 등	서류, 발표
제품 경쟁력 (Quality of the Solution/ Product)	• 기술적 완성도, 문제 해결의 명확성,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규제 이해도 및 시장 적합성 등	
비즈니스 모델&시장성 (Business Model & Marketability)	•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타겟 시장 정의 적정성, 경쟁환경 분석 및 차별성, 시장 확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	서류
글로벌 진출 역량 (Global Readiness)	• 해외 사업 경험,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 이해도 및 진출 전략의 구체성·실효성 등	
사업화 준비도 (Commercialization Readiness)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단계 및 재무 현황, 투자유치 계획 등	
프로그램 적합성 (Program Fit)	• 본 프로그램과 기업의 사업 방향 및 목표 간의 적합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	
글로벌 시장 진입 역량 (Market Opportunity)	• 사업 관련 규제 대응 준비성·역량,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도 및 고객 검증 여부 등	발표
미래 전망 (Future Projection)	• 자금 운용 계획의 적정성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 창업기업 선정 평가지표(안)는 평가 시 일부 변경·운영 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센터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참여 불가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창업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단,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하에 사업계획서상 C레벨 이상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 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3 참조)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 3 참조)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 참여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대표자 또는 주요 임원진 등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하여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 출장 일정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7

문의처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펜벤처스코리아) 담당자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펜벤처스코리아	02-6956-2043	contact@pen.ventures
	02-6956-2717	
	02-6956-2718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3**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연번	사 업 명	소관 부처(기관)
1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3	· 투자연계형 GMEP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4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참고 4**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우편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